

目 次

東洋古典譯註叢書を 발간하면서

凡 例

參考書目

目 次

卷13 策

- 01. 君術策 一 임금의 통솔방법에 대한 策文 1 / 11
- 02. 君術策 二 임금의 통솔방법에 대한 策文 2 / 19
- 03. 君術策 三 임금의 통솔방법에 대한 策文 3 / 26
- 04. 君術策 四 임금의 통솔방법에 대한 策文 4 / 32
- 05. 君術策 五 임금의 통솔방법에 대한 策文 5 / 37

卷14 策

- 01. 臣事策 一 신하의 할 일에 대한 策文 1 / 43
- 02. 臣事策 二 신하의 할 일에 대한 策文 2 / 49
- 03. 臣事策 三 신하의 할 일에 대한 策文 3 / 56
- 04. 臣事策 四 신하의 할 일에 대한 策文 4 / 62
- 05. 臣事策 五 신하의 할 일에 대한 策文 5 / 71

卷15 策

- 01. 臣事策 六 신하의 할 일에 대한 策文 6 / 79
- 02. 臣事策 七 신하의 할 일에 대한 策文 7 / 87
- 03. 臣事策 八 신하의 할 일에 대한 策文 8 / 94

- 04. 臣事策 九 신하의 할 일에 대한 策文 9 / 103
- 05. 臣事策 十 신하의 할 일에 대한 策文 10 / 108

卷16 策

- 01. 民政策 一 백성을 위하는 정치에 대한 策文 1 / 114
- 02. 民政策 二 백성을 위하는 정치에 대한 策文 2 / 121
- 03. 民政策 三 백성을 위하는 정치에 대한 策文 3 / 130
- 04. 民政策 四 백성을 위하는 정치에 대한 策文 4 / 137
- 05. 民政策 五 백성을 위하는 정치에 대한 策文 5 / 146

卷17 策

- 01. 民政策 六 백성을 위하는 정치에 대한 策文 6 / 157
- 02. 民政策 七 백성을 위하는 정치에 대한 策文 7 / 165
- 03. 民政策 八 백성을 위하는 정치에 대한 策文 8 / 172
- 04. 民政策 九 백성을 위하는 정치에 대한 策文 9 / 179
- 05. 民政策 十 백성을 위하는 정치에 대한 策文 10 / 194

卷18 序·引·傳

- 01. 古今家誠敍 《古今家誠》에 대한 서문 / 203
- 02. 古史敍 《古史》에 대한 서문 / 208
- 03. 元祐會計錄序 元祐 연간에 작성한 《會計錄》에 대한 서문 / 214
- 04. 民賦序 <民賦>에 대한 서문 / 225
- 05. 收支敍 <收支>에 대한 서문 / 237
- 06. 子瞻和陶淵明詩集引 子瞻이 陶淵明의 詩集에 화답한 시에 대한 서문 / 242
- 07. 巢谷傳 巢谷에 대한 傳記 / 247

卷19 記

- 01. 王氏清虛堂記 王氏의 清虛堂에 대한 기문 / 254

02. 南康直節堂記 南康軍의 直節堂에 대한 기문 / 258
03. 武昌九曲亭記 武昌의 九曲亭에 대한 기문 / 262
04. 遺老齋記 遺老齋에 대한 기문 / 266
05. 東軒記 東軒에 대한 기문 / 270
06. 待月軒記 待月軒에 대한 기문 / 275
07. 洛陽李氏園池詩記 <洛陽李氏園池詩>에 대한 기문 / 278
08. 黃州快哉亭記 黃州의 快哉亭에 대한 기문 / 281
09. 齊州閔子廟記 齊州의 閔子廟에 대한 기문 / 285
10. 上高縣學記 上高縣學에 대한 기문 / 290
11. 京西北路轉運使題名記 京西北路의 轉運使題名에 대한 기문 / 294
12. 杭州龍井院訥齋記 杭州 龍井院 訥齋에 대한 기문 / 298

卷20 說・贊・辭賦・祭文・雜著

01. 易說 《易經》에 대한 說 / 302
02. 詩說 《詩經》에 대한 說 / 306
03. 春秋說 《春秋》에 대한 說 / 319
04. 管幼安畫贊 管幼安의 畫상에 대한 贊 / 325
05. 御風辭 御風에 대한 辭 / 331
06. 黃樓賦 黃樓에 대한 賦 / 336
07. 祭歐陽少師文 歐陽少師에 대한 祭文 / 344
08. 代三省祭司馬丞相文 三省을 대신해 지은 司馬丞相에 대한 祭文 / 351
09. 書白樂天集後 《白樂天集》 뒤에 쓰다 / 356
10. 書金剛經後 《金剛經》 뒤에 쓰다 / 364
11. 書楞嚴經後 《楞嚴經》 뒤에 쓰다 / 373

附 錄

1. 韓國 古文獻 所載 蘇轍 關聯資料 / 375
2. 韓·中·日의 蘇轍 研究圖書 및 論文 目錄 / 381

宋大家蘇文定公文抄 卷13

策

01. 君術策 一* 임금의 통솔방법에 대한 策文 1

* 《欒城應詔集》 권6에 <進策五道>가 있는데, 이 글은 바로 <君術> 제1편이며, 篇首에 ‘臣聞’ 2字가 있다. 본편의 논술 목적은 임금이 신하를 통솔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策은 文體 이름이다. 策에는 對策과 射策 두 가지가 있으니, 《文心雕龍》 <議對>에 “對策은 詔命에 응하여 政事에 관한 일을 진술하는 것이고, 射策은 일을 탐구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말이 이치에 맞는 것이 비유하자면 화살이 과녁에 적중하는 것과 같다.[對策者 應詔而陳政也 射策者 探事而獻說也 言中理准 譬射帳中的]”는 말이 보인다.

《欒城應詔集》의 篇首에 있는 ‘臣聞’ 2字는 策問에 있어 冒頭에 형식적으로 붙인 것이다. 아무리 형식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臣聞’ 2字가 있을 경우는 번역에 있어서는 “臣은 듣건대” 또는 “臣은 들으니”라고 번역하여, 들은 말을 인용부호나 종지부 등을 적절하게 써서 문장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형식적으로 붙은 것을 번역문장에 맞추어 처리하다 보면 어색한 점이 더러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茅坤이 ‘臣聞’ 2字를 가볍게 보고 빼버렸는데, 없는 ‘臣聞’ 2字의 뜻을 굳이 살려 번역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러므로 <君術策>, <臣事策>, <民政策>을 번역함에 있어서는 ‘臣聞’ 2字의 뜻을 살리지 않을 것이다.

君術五篇이 亦是一篇이니 大略欲人君知所以御天下之術이니라 而行

文甚紆徐百折^하니 當熟看波¹⁾니라

<君術策> 5편은 역시 1편의 문장을 이룬 것인데, 내용은 대략 임금이 천하를 통솔하는 방법을 알게 하려고 한 것이다. 문장이 매우 느긋하게 흐르며 많은 굽이를 치고 있으니, 波瀾이 이는 곳을 익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1) 當熟看波：四庫全書의 《唐宋八大家文鈔》에는 ‘當熟看波瀾處’로 되어 있다.

天下之事¹⁾는 非宰相이면 不可盡行이요 非諫官이면 不可盡言이니이다 天下之人이 誰能必至於諫官宰臣者^리잇가 惟其少而學之^는 長而欲行之^어늘 終其身而不當其位면 不可以侵官而求盡其意니이다 是故로 士大夫之間에 猶有不能自盡其才於天子者也^니이다

천하의 모든 일은 宰相이 아니면 다 행할 수 없고, 諫官이 아니면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천하의 사람들이 누구나 반드시 諫官과 宰臣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젊어서 배우는 것은 장성해서 실행하려는 것인데, 종신토록 그 직위에 오르지 못하면 다른 관원의 직권을 침범하여 뜻을 펼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士大夫들 중에는 오히려 스스로 그 재주를天子께 다 사용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1) 天下之事：《欒城應詔集》에는 ‘臣聞天下之事’로 되어 있다.

今臣은 幸而生於天下無事之時^니이다 每一間歲에 天子常詔兩制大臣¹⁾하여 使舉天下之士^하시니 上自登朝之吏²⁾로 而下至於山林之匹夫³⁾히 咸得竭其所懷하여 以盡天下之利害^니이다 非天子出納耳目之官⁴⁾이나 而得以言萬民之情僞요 非天子黜陟賞罰之臣이나 而得以論百官之長短이요 非天子武力將帥之士나 而得以議兵革之強弱이요 非天子錢穀大農之吏나 而得以推財用之多少^니이다 蓋天下之人은 非必爲宰相諫官而後可盡行而盡言者^로되 使之一旦得以詳數而悉說之^시니 此有以見天子之意 所以待之者甚重而不輕也^니이다 而臣何敢以無說而處於此^리잇가

지금 臣은 다행히도 천하가 무사할 때에 태어났습니다. 매년 한 해 걸려서天子께서는

항상 兩制大臣에게 명하여 천하의 선비들을 선발하게 하시니, 위로 조정의 관리로부터 아래로 山林의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회를 기울여 천하의 이해관계를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관리와 산림의 평민은 비록> 天子의 명령을 전달하는 관원은 아니지만 백성들의 病弊를 말할 수 있고, 天子의 黜陟과 賞罰을 담당하는 신하는 아니지만 관원들의 長短을 말할 수 있고, 天子의 국방을 담당하는 장수는 아니지만 武器의 強弱을 논할 수 있고, 天子의 재정과 농업생산을 주관하는 관리는 아니지만 財用의 多少를 거론할 수 있습니다.

대개 천하의 사람들은 꼭 宰相과 諫官이 된 뒤에야 모두 행하고 모두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로 하여금 하루아침에 상세히 살피고 모두 열거할 수 있게 하셨으니, 여기에서 <천하의 인사들에 대한> 天子의 기대가 매우 큰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臣이 어떻게 감히 말 없이 여기에 처할 수 있겠습니까?

- 1) 兩制大臣：兩制는 宋나라 때에 황제의 詔令을 짓는 관원을 知制誥라고 했으며, 지제고에는 內制(내지제고)와 外制(외지제고)가 있었으니, 내제는 翰林學士를 가리키고 외제는 中書舍人을 가리킨다. 한림학사는 황제의 면전에서 기밀 사건의 조서를 짓고, 기타 사건은 중서사인이 재상의 지시를 받아 기초하였다.
- 2) 登朝之吏：조정에서 벼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 3) 山林之匹夫：일반 백성을 가리킨다.
- 4) 出納耳目之官：황제의 명령을 전달하여 아래의 民情을 반영하는 관원을 가리킨다.

臣常以爲天下之事는 雖其甚大而難辦者나 天下必有能辦之人이니이다 蓋當今之所謂大患者는 不過曰 四夷強盛이나 而兵革不振하고 百姓凋弊나 而官吏不飭하고 重賦厚斂이나 而用度不足하고 嚴法峻令이나 而姦宄不止니이다 此四患者는 所以使天子坐不安席하고 中夜太息而不寐者也니이다 然이나 臣皆以爲不足憂니이다 何者잇가 天下必有能爲天子出力而爲之者니이다 而臣之所憂는 在乎天下之所不能如之何者也니이다

臣은 항상 ‘천하의 일은 비록 매우 커서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나 천하에 반드시 잘 처

리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개 현재의 이른바 '큰 禍患'이란 四夷가 强盛한 것에 불과할 뿐인데 兵革이 떨어지지 못하고, 백성이 피곤에 지치는데도 官吏는 구제하지 않고, 세금을 무겁게 거두지만 용도는 부족하고, 법령이 준엄하지만 안팎에서 난을 일으키는 일은 그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禍患은 天子로 하여금 마음이 불안하여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하고 밤중에 한숨을 쉬며 잠을 이루지 못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臣은 모두 죽히 걱정할 것이 못 된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천하에는 반드시 능히 天子를 위하여 힘을 내어 처리할 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臣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천하의 어떻게 할 수 없는 바에 있는 것입니다.